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5-234호	도로구간 폐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25-236호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떡절교(제2자유로)]	3
고양시 고시 제2025-237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5-1851호	도시계획시설(반려동물공원, 대로2-1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전 열람 공고	6
고양시 공고 제2025-1871호	창릉천 재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9
고양시 공고 제2025-1883호	고양시 금고 지정 계획 재공고	13

고양시 고시 제2025 - 234호

도로구간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5. 7. 25. (금)
2. 효력발생일 : 2025. 7. 25. (금)
3. 고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고 시 내 용 :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
※붙임(조서 및 도면) 참조
5. 변 경 사 유 : 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031-8075-3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도면 (향동동)

도로명	관할 구역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폐지 사유	고시일 (효력발생일)
		기점	종점						
① 작은늑골길 (주도로)	향동동	향동동 126-2	향동동 산18-3	701	4	21	1(2)→69(70)	향동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2025. 7. 25. (2025. 7. 25.)
② 애기능1로 (주도로)	향동동	향동동 126	향동동 15-1	279	3	20	1(2)→27(28)	향동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2025. 7. 25. (2025. 7. 25.)
③ 애기능2로 (주도로)	향동동	향동동 120-5	향동동 120-49	177	4	20	1(2)→17(18)	향동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2025. 7. 25. (2025. 7. 25.)
④ 애기능안길 (주도로)	향동동	향동동 119-16	향동동 120-19	190	6	19	1(2)→19(20)	향동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2025. 7. 25. (2025. 7. 25.)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고시 제2025-236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역절교 (제2자유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2-90번지 일원	고양시장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시설물 철거공사에 따른 제3종 시설물 해제	-	

고양시 고시 제2025 - 23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504 등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 07.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8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504 (성사동)	2025-07-25	20090911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8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502 (성사동)	2025-07-25	20090911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8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492 (성사동)	2025-07-25	20090911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289-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54-58 (원흥동)	2025-07-25	20090710	지명인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28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54-56 (원흥동)	2025-07-25	20090710	지명인용	
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04-27, 9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102번길 83-2 (설문동)	2025-07-25	20100126	문원길 시점에서 102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9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102번길 81 (설문동)	2025-07-25	20100126	문원길 시점에서 102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91-1, 104-46, 104-4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102번길 81-1 (설문동)	2025-07-25	20100126	문원길 시점에서 102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595번길 58-16 (대자동)	2025-07-25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15950m에 위치한 도로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473-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539번길 70-24 (대자동)	2025-07-25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15390m에 위치한 도로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9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봉산로 269-39 (용두동)	2025-07-25	20000727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8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7길 5 (지축동)	2025-07-25	20191101	고유지명 및 유래 등을 고려하여 선정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70, 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35번길 23 (용두동)	2025-07-25	20100126	용두로 시점에서 350m에 위치한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72-2, 270-2, 270-3, 2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35번길 25 (용두동)	2025-07-25	20100126	용두로 시점에서 350m에 위치한 도로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788-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운정로 187-3 (성석동)	2025-07-25	20090824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5-6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10-65 (신평동)	2025-07-25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5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창로 138 (도내동)	2025-07-25	20131108	문화재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35번길 25	2025-07-18	건물 신축	2011-07-29	용두동	

고양시 공고 제2025-1851호

도시계획시설(반려동물공원, 대로2-1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전 열람 공고

- 1. 고양시 고시 제2024-205(2024. 5. 24.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199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반려동물공원, 대로2-1호선)사업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고시 전 일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58	일산서구 반려동물 공원	반려동물공원	일산서구 대화동 1993	16,530	증)0.2	16,530.2	고양시 고시 제2021-210호 (2021. 6. 4.)	

나.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58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 면적증가 · 면적 : 16530㎡ → 16530.2㎡ 증0.2㎡	- 현황측량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2. 실시계획(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9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반려동물공원, 대로2-1호선)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농산유통과장)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당초	358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반려동물공원	일산서구 대화동 1993번지 일원	16,530.0	
변경	358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반려동물공원	일산서구 대화동 1993번지 일원	16,530.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

3. 관계도면: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반려동물공원

연번	소재지 (동)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6,530.2	16,530.2					
당초 1	대화동	1993	공	21,575.2	16,530.0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	-
변경 1	대화동	1993	공	16,530.2	16,530.2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대로2-1호선

연번	소재지 (동)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355	355					
당초 1	대화동	1993	공	21,575.2	16,530.0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	-
변경 1	대화동	1993-3	공	355	355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공고 제2025-1871호

창릉천 재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릉천 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내습으로 인한 침수피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25.

고 양 시 장

- 설치목적 : 창릉천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보안, 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예고기간 : 2025. 7. 25.(금) ~ 2025. 8. 14.(목)(21일간)
- 설치장소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81번지 일원
- 촬영범위 : 주변 15~20M 내외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설치예정일 : 2025년 하반기 중
- 공고방법 : 고양시 관보,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 의견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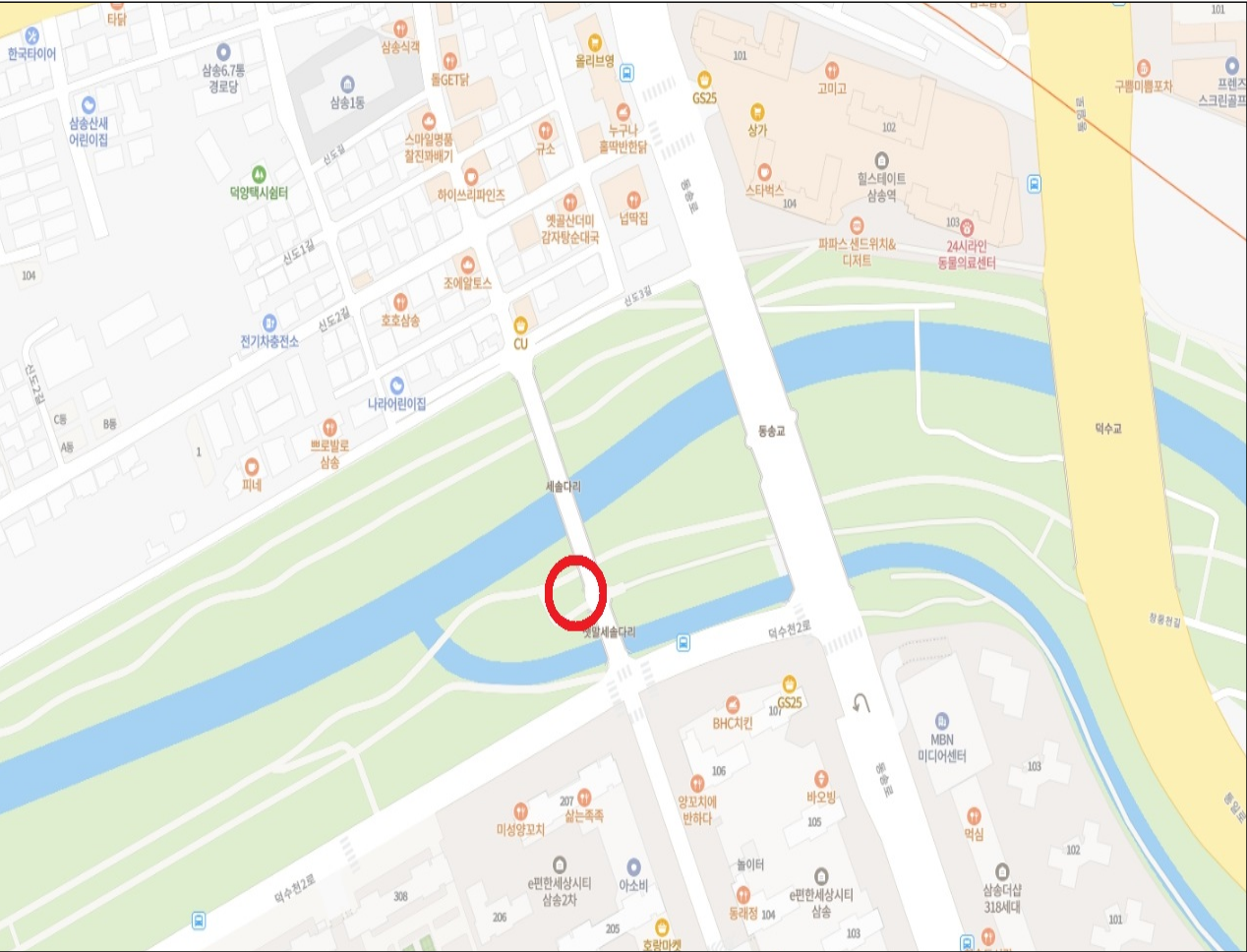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 8. 14. 까지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4쪽 참고)
- 제출방법 : 방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방 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 302호(충현빌딩)
 - 전자우편 : phil0407@korea.kr
 - 팩 스 : 031-8075-4925 (※ 팩스 전송 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위치

설치 위치

연 번	행정동	지번 주소	상세위치	카메라 대수	비 고
1	창릉동	덕양구 동산동 381	창릉천 세솔다리 인근	1대	신규설치

위치도(동산동 381번지 인근)



【의견서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업명	창릉천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위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내용			
2025년 창릉천 재난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공고 제2025-1883호

고양시 금고 지정 계획 재공고

고양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고양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1. 지정방법 : 경쟁방법
2. 약정기간 : 4년(2026. 1. 1. ~ 2029. 12. 31.)
3. 금고의 수 : 단수금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4.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공고일 현재 고양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신청절차

○ 관련서류 교부 및 열람

- 기간 : 2025. 7. 28.(월) ~ 2025. 8. 1.(금) (10:00 ~ 17:00)
- 장소 : 시청 세정과(제1별관 4층, ☎ 031-8075-2255~2256)
- 주요내용

- ▶ 「고양시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 책자 교부
- ▶ 2022 ~ 2024년 결산서 및 2025년 예산서 열람 등

※ 고양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예산정보)에서 상시 열람 가능

○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8. 7.(목) ~ 2025. 8. 8.(금) (10:00 ~ 17:00)
- 접수장소 : 시청 세정과(제1별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제출서류

- ▶ 금고 지정 신청서 1부(원본)
- ▶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3부(원본 1, 사본 12), 요약서 13부 별도
- ▶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그밖에 고양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표

8. 평가(심의) 및 지정방법

-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고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심의·평가함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고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되,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차순위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함

9. 약정 및 손해배상

- 시 금고 지정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고양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 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용되어야 하며, 정상 운용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금고은행이 변경될 경우 인계·인수반 구성·운영 및 신(新)·구(舊) 금고 간 합동근무를 하여야 함
- 신·구 금고 간 금고업무 인계·인수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가 도래한 후 인계·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비용부담

- 금고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금고운영을 위한 세입 및 자금배정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고양시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는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
 - ※ 제출자료 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제안서 1부는 제외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신청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하기 바람
- 금고지정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고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은 ‘고양시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름

[별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I. 총괄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1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1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그 밖의 사항	소 계	3	
	가.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2)	
	나. 녹색금융 추진 실적	(1)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평가 (8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의거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3)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3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퍼센트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의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ATM 설치 대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의 사항 (3점)

가.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2점)

- 탈석탄 선언 여부 및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의 단계적 회수계획 수립 여부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녹색금융 추진 실적 (1점)

- 여신·투자 심사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활용하여 기업의 환경성평가, 상품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활용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